

2016년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2016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0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사업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 절차 및 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국가 성장전략에 기반한 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미래신산업을 육성하고 주력기간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여 미래 신성장동력을 창출

1-2. 지원대상분야

- 10년 이내에 기술적 파급효과가 크고 산업 기술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가 높은 핵심기술, 원천기술 및 엔지니어링 기술

※ 창의산업분야 :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 소재부품산업분야 : 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주력산업IT융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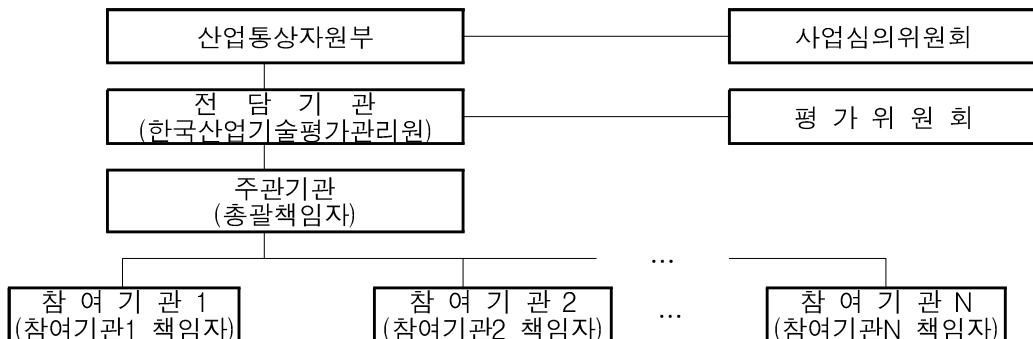
※ 시스템산업분야 : 로봇, 스마트카, 의료기기, 조선해양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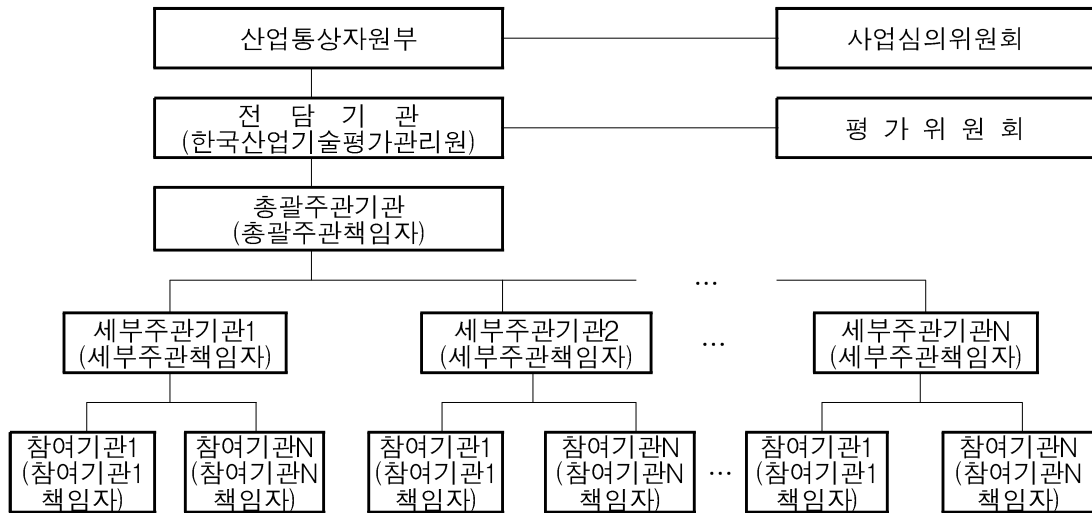
구분	창의산업 분야	소재부품산업 분야	시스템산업 분야
세부사업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주력산업IT융합	로봇, 스마트카, 의료기기, 조선해양
신규예산	29억원	100억원	76억원
대상과제	3개	10개	12개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지원기간	과제별 특성에 따라 3~5년 이내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일반형 과제)



○ 추진체계 (병렬형 과제)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수행기관 ¹⁾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²⁾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③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8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련하여 기술료 징수
-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징수 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름. 다만, 사업분야 중 바이오, 의료기기 분야는 경상기술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되, 불가피한 경우 과제별로 정액기술료 선택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¹⁾	경상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1)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함

2)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임
 3)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3-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

산업 분야	지식서비스	엔지니어링	산업소재핵심		
			금속재료	뿌리산업	세라믹
인건비 비중	67	41	39	39	39

산업 분야	로봇	전자부품핵심	자동차산업핵심	전자시스템핵심	조선해양
		주력산업IT융합	스마트카	의료기기	
인건비 비중	48	55	37	47	49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1)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대분류인 “지식서비스” 내에 있는 과제는 현금인건비 산정 가능
 - 예2) RFP에 표기된 중분류가 “자동차/철도차량”인 과제가 주요 개발내용이 “차량지능화 기술”, “자동차 관련 SW” 개발로 이루어진 경우, 설계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차량지능화 기술, 차량 관련 SW 기술)을 담당하는 수행기관은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 이때 사업계획서 표지 상단에 표기된 설계 및 SW 산업기술분류코드가 RFP상 표기된 중분류내의 코드이어야 함(100206, 100211).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단,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중소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6년 4월 11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는 유형별로 3가지 항목(가~다)으로 분류되며, 각 항목별 1개 이상 해당함
예시)

구분	과제유형		
	가. 추진체계	나. 개발형태	다. 공모형태
A과제	일반형	원천기술형	지정공모형
	병렬형	혁신제품형	품목지정형

□ 과제 유형 - 가 (추진체계)

- 일반형 과제: 총 1개 과제로 구성되어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병렬형 과제**: 세부과제의 기술개발 결과가 독립적으로 사업화 또는 상품화되는 과제로 총괄, 세부과제가 각각 단독으로 신청하여 총괄, 세부과제 단위로 경합 평가 (선정된 세부 주관기관과 총괄주관기관간의 협약체결 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수행)

□ **과제 유형 - 나 (개발형태)**

- **원천기술형 과제**: 제품에 적용 가능한 독창적·창의적인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혁신제품형 과제**: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유형 - 다 (공모형태)**

- **지정공모형 과제**: 개발이 필요한 대상기술과 도전적 기술목표(RFP)를 제시
- **품목지정형 과제**: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제시 없이 품목(제품, 제품군)만 제시(지정공모와 자유공모의 중간 형태)
 - 자유공모형, 정책지정형 과제는 금번 공고에 해당사항 없음

□ **지원대상 과제 목록**

산업 분야	사업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가	나	다	
창의 산업	지식 서비스	1	출하 후 품질문제 대응을 위한 제조정보 추적관리 및 가시화 서비스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2	개인 경제활동 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지식생성 및 지식서비스 시스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디자인연계
	엔지니어링	3	중소형 플랜트의 유지보수 엔지니어링 역량 강화를 위한 모델기반의 형상관리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소재 부품 산업	금속 재료	4	고속 고효율 친환경자동차용 전동기 극박 철심소재 및 성형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뿌리 산업	5	대형 PCB기관 전기 도금용 ICT융합 스마트 도금제어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6	에너지 저감형 고력 알루미늄 합금 정속압출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세라믹	7	Si Wafer 대체용 다공성 세라믹 기반의 10mW급 초소형 듀얼 가스센서 및 모듈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초고난도
	주력 산업 IT 융합	8	Multi-Source 에너지 응집 및 초저전력 구동 Self-Powered IoT 디바이스 플랫폼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 기술	지정 공모	초고난도
		9	생산성 최적화 및 Seamless 설비운영을 위한 인공지능기반 제조상황 진단/예측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지정 공모	
		10	(총괄) 제품-서비스 융합 기술 및 사업 모델 개발 및 실증	제한없음	징수	병렬	혁신 제품	품목 지정	경쟁형R&D
			(세부) 제품-서비스 융합 기술 및 사업 모델 개발 및 실증	중소·중견 기업					
		11	지능형 멀티모달 처리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12	제조 산업 IoT를 위한 Cloud Connector 플랫폼 기술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13	혼합현실(MR)기반 가상 산업현장 지원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 기업	징수	일반	혁신 제품	품목 지정			
시스	로봇	14	인간 내면상태의 인식 및 이를 이용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	품목	

산업 분야	사업 분야	순번	과제명	주관기관	기술료	과제유형			비고
						가	나	다	
템산업			인간친화형 인간-로봇 상호작용 기술 개발				기술	지정	
		15	로봇의 자연어 인식 및 감성 대화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16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동로봇의 주행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17	인공지능을 이용한 로봇 매니퓰레이터의 조작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18	로봇을 위한 사람 및 물체의 영상기반 고도지능 인식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19	제조용 로봇 및 공정설비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고장예방 및 공정품질 개선 기술 개발	대학	비징수	일반	원천기술	품목지정	
	스마트카	20	인휠 시스템을 통한 스마트주행 e-모빌리티 개발	중소·중견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품목지정	
	의료기기	21	인공지능을 활용한 PACS시스템 연계 의료영상 진단지원 기술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표준화연계, 특허연계
		22	3D 디지털 기술을 융합한 치아 프레스용 자동화 시스템 개발	중소·중견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초고난도, 디자인연계
		23	싱글포트 수술을 위한 모듈형 복강경 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특허연계
	조선해양	24	무평형수 선박 구현을 위한 핵심기술 개발	제한없음	징수	일반	원천기술	지정공모	초고난도
25		에너지절감기술의 실선 적용 및 실효역 성능 검증	기업	징수	일반	혁신제품	지정공모	시스템형	

* 지원대상 과제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또는 www.keit.re.kr) 참조

*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의 총사업비 및 총수행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 가능함

4-2. 신청자격 (가.품목지정, 나.지정공모)

가. 품목지정

- ◇ 품목지정의 경우 산업기술 R&D제도 혁신방안('14.6)에 의한 R&D 프로세스 개편에 따라 신청자격, 평가절차, 평가기준, 신청서 제출기한 등을 세분화 하여 적용
 - ① 개념계획서 평가(개념계획서 접수 및 평가)→ ② 사전 서면검토(사업계획서 접수 및 서면검토)→ ③ 사업계획서 평가 順
- ◇ 계획서는 개념계획서, 사업계획서로 구성
-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계획서 제출 가능

가-① 개념계획서

- ◇ (개요) 제안된 연구과제에 대해 연구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의 특성, 중요성, 방법론 등 아이디어를 간략하게 정리한 예비 계획서
-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 평가자의 이해제고를 위해 표, 그림, 차트 등의 도식적 작성 및 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정량적 수치 등의 사용을 권고
 - * 표지 부분을 제외하고 연구자를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평가에서 배제함
- ◇ (분량) 총 5페이지 이내(표지, 제안기관 정보 제외시), 공통항목별 1~1.5페이지 내외
- ◇ (개념계획서 평가) 제안자의 발표(면접)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개념계획서를 토대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서 제출대상” 선정

□ 주관기관

- 해당 품목의 기술개발이 가능한 대학 또는 중소·중견기업 등
 -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본 사업계획서 평가)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가-② 사업계획서

- ◇ (개요) 선정된 개념계획서(주관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 ◇ (서식) 공고시 첨부양식 참조(전담기관 홈페이지)
- ◇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주관기관은 필요시 “온라인 과제발굴 플랫폼(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을 활용하여 참여기관 등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음
 - * 주관기관은 개념계획서 신청시, 참여기관을 공개적으로 찾고자 할 경우 개념계획서 ‘공개’를 선택하여 주관기관의 기본정보(과제명, 주관기관명, 연구 책임자)를 공개할 수 있음
 - * 개념계획서 공개는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시까지 공개
- ◇ (사업계획서 제출) 개념계획서 ‘미공개’ 주관기관은 자율적으로, ‘공개’ 주관기관은 참여희망 기관 중 사업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등을 선택하여 컨소시엄 구성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주관기관

- 개념계획서 주관기관 자격과 동일하며, 주관기관으로서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신청 기관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나. 지정공모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평가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참여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 부채비율 계산시 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2항 제1호로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예외로 함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3개	5개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16년 공고 이후 신규 수행한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으로 평가결과를 확정 받는 경우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수로 판정. 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의 지정공모형 과제는 “도전적 R&D 과제”로,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이력 누적 조건에서 제외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품목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2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4-4.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자료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의 “자료→지원과제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세부과제→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16. 10. 25(화) ~ 2016. 11. 9(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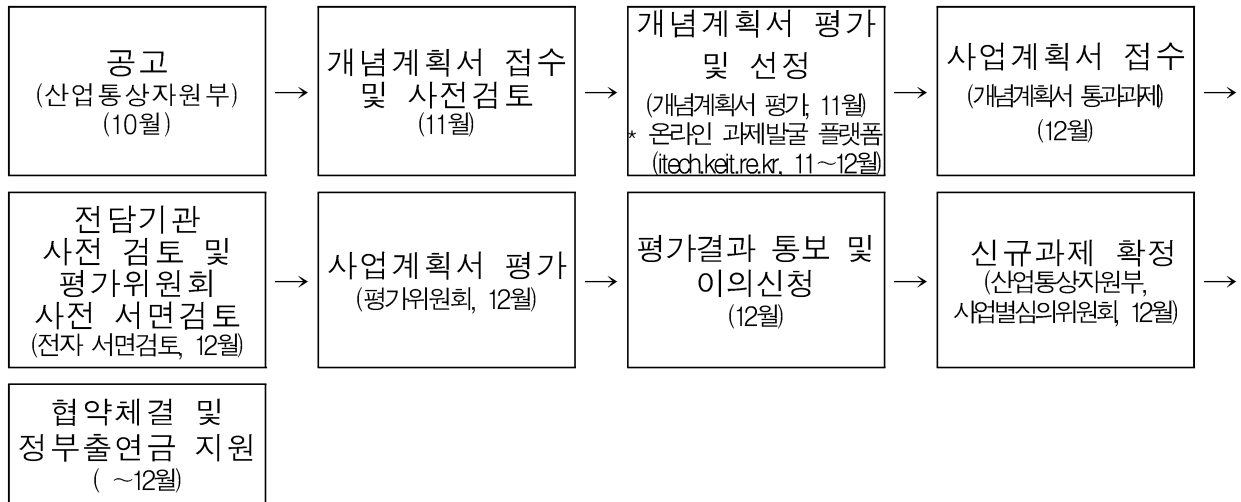
- 제 기 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1544-6633, 053-718-8476)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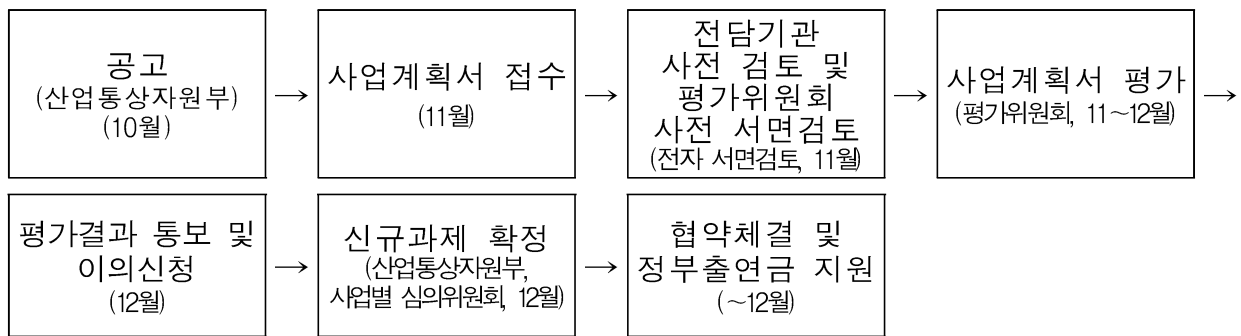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품목지정형)



□ 평가절차(지정공모형)



-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피평가자 상호간 “토론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가능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① 개념계획서 평가항목

- 품목지정형 과제의 개념계획서에 대하여 평가

평가항목	세부 항목
목표 및 필요성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목표와 내용(10) : 목표도전성, 구성적절성 • 기술개발 필요성(20) : 지원타당성, 분야적절성, 개발당위성, 시장부합성
기술특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성(10) : 기술적 혁신성 • 차별성(10) : 기술적 차별성
개발전략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방법(10) : 개발방법의 적합성 • 위험극복방법(10) : 위험극복전략의 타당성 • 연구역량(10) : 제안기관의 연구 인프라 및 역량
기대성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계획(10) : 사업화효과 • 파급효과(10) : 기술, 경제, 사회적 파급효과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 과제 : 개념계획서별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비대상”으로 함. 단, 70점 이상인 경우가 다수일 경우 품목 또는 지원분야별로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최고득점순으로 최대 3개 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으로 결정함. 또한, 개념계획서가 3개 미만으로 접수된 경우에는 개념계획서 평가를 생략하고 사업계획서 및 기타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토록 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제출 대상”인 신청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 제출을 통보받은 날부터 사업계획서 제출 마감일(‘16. 12 1(목) ~ 12 7(수) 18:00까지) 이내에 사업계획서를 포함하여 신규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② 사업계획서 평가항목

- 과제 유형에 따라 평가항목을 달리 정함

과제유형	평가항목	세부 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 경제성
혁신제품형	기술성(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의 도전성 및 창의성 ▪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창의성
	연구역량(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괄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화 의지 ▪ 사업화 계획 ▪ 경제성

- * “혁신도약형 R&D사업”은 도전성·창의성 50%이상,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20%이상으로 선정평가 함
- * “초고난도 과제”의 경우 중간평가를 컨설팅 형태로 추진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5점)
 - ②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5점)
 - ③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여성참여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3점)
-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 가점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도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주관기관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3점)
 - 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임직원이 선정 된 경우 혹은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포함)
 - ②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③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 ④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2점)
- * 장관상 수상자에 한하며, 전담기관장상 수상자는 가점부여 대상이 아님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수행 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 (5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받은 과제의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성과활용평가 결과 통보 후 3년 이내인 경우(3점)
- * 본 감점사항은 2016년 최종평가 대상 과제의 성과활용평가 결과부터 반영함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구분	1. 품목지정		2. 지정공모
	① 개념계획서	② 사업계획서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16.10.11(화) ~ 2016. 11. 9(수)까지 30일	(개념계획서 평가 통과 과제)	○ 공고기간 : 2016.10.11(화) ~ 2016. 11. 9(수)까지 30일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양식교부: 2016. 10. 13(목) ~ 2016. 11. 9(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좌동	○ 양식교부: 2016. 10. 13(목) ~ 2016. 11. 9(수)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인터넷 전산 등록 및 신청서 제출	○ 전산등록 : 2016. 10. 25(화) ~ 11. 9(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11. 3(목) ~ 11. 9(수) 18:00까지	○ 전산등록 : 2016. 11. 24(목) ~ 12 7(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12 1(목) ~ 12 7(수) 18:00까지 * 개념계획서 평가결과 통보일에 따라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변동될 수 있음	○ 전산등록 : 2016. 10. 25(화) ~ 11. 9(수) 18:00까지 ○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2016. 11. 3(목) ~ 11. 9(수) 18:00까지
온라인 과제 발굴 플랫폼 (산업기술 지원 사이트 (itech.keit.re.kr))	○ 개념계획서 평가 결과 통보 받은날 ~ 20일 이내(사업계획서 접수일) * 개념계획서 평가(11.11~ 11.17 예정, 일정 변동 가능)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전산 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계획서 및 첨부서류)를 우편 또는 인편으로 제출
(신청서 제출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 ※ 우편물 표지에 인터넷 접수번호, 지원분야, 주관기관, 과제명을 필히 기재
- ※ 인터넷 전산 접수 후 '전산접수증을 출력'하여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전산 등록처 : 산업기술지원 홈페이지(itech.keit.re.kr)

→ 온라인사업관리에서 과제접수(주관기관이 전산 등록)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전산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전산접수 불가
- ※ 일반형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전산접수

□ 신청서 접수처

- 접수처 : (41069)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8길 32(신서동 1152)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총괄팀(☎ 1544-6633, 053-718-8476)

- ※ 전산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전산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의 경우는 신청서 접수가 불가함

-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8. 제출 서류 사항

① 개념계획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개념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주관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1부	
주관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1부	
과제책임자 및 실무책임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관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주관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② 사업계획서(지정공모 과제 및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에 해당)

서 류 명	원본/사본	부수	비고
전산접수증	원본	1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 인터넷 전산 등록을 통해 정보를 입력한 후 접수확인증을 출력
사업계획서	원본/사본	1부/9부	총10부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사본	각1부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원본	각1부	모든 신청 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기관(기업)별 날장 제출 가능)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원본	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 중 중소기업만 해당)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원본	각1부	작성은 2부 (1부는 보관 후 선정 시 사용)
수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원본	각1부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2년 결산) ※ 가결산 재무제표는 제출 불가

※ 수행기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모두에 해당

- ※ 과제 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 ※ 개념계획서 평가를 통과한 품목지정 과제의 경우, 주관기관이 개념계획서 평가를 위해 기 제출한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 생략 가능

9. 기타 유의 사항

□ 지원대상 과제별 신청시 유의사항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이라고 표기된 과제는 반드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이 되어야 함. “기업”으로 표기된 과제는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모두 주관기관으로 신청 가능함. 대기업은 “지원대상과제 목록”에 “고위험형”, “시스템형”, “수요연계형”으로 표기된 과제에 한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하나,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대기업은 이를 예외하여 주관기관으로 지원이 가능함.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중소·중견기업”으로 표기된 과제에 주관기관으로 지원 가능함.

* 참고 : 대기업 주관 가능한 과제 유형

과제 유형	내 용
고위험형	미래기술개발 또는 글로벌 시장 창출을 위해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하며 리스크가 큰 과제
시스템형	대기업은 전체 시스템을 설계하고 중소·중견기업들은 요소기술을 통합·개발하는 과제
수요연계형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 등 타 주체와 연계하여 개발기술의 수요처 또는 소재 공급처로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정부출연금 100%까지 지원가능하며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기술료 징수” 과제는 영리기관이 반드시 수행기관으로서 과제에 참여해야 함
- 표준화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특허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 중소기업·중견기업이 주관하는 과제는 “바우처 제도” 적용 대상 과제로,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이 때, 바우처의 규모는 협약에 명기하며, 참여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에 대한 수시 확인과 주관기관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 등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함 (공고문의 첨부파일 내용 참조 필수)
- 여성연구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자동차, 철강)의 R&D 과제 신청시, 여성연구원의 참여가 5%보다 낮은 기업은 “여성인력 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 대상사업 : 자동차산업핵심기술개발 중 스마트카, 산업소재산업핵심기술개발 중 금속재료

- 로봇·전자시스템(의료기기)·전자부품(주력산업IT융합)·지식서비스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의결에 따른 “혁신도약형 R&D사업”의 산업통상자원부 지정사업임
- **과제제안요구서(RFP) 별 안내사항**
 - 과제제안요구서 10번 과제(주력산업IT융합 분야)는 “경쟁형 R&D”로서,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수행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차/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수행 기관 과제를 최종 선별함
 - 과제제안요구서 14~19번 과제(로봇)의 경우, 동일한 주관기관 책임자가 2개 이상의 로봇분야 과제를 동시 지원받을 수 없음
 - 과제제안요구서 24~25번 과제(조선해양 분야)는 동 공고의 ‘3-1 사업비 지원기준’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을 아래 표와 같이 예외하여 적용함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20.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평가지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참여연구원 수, 비율 등)이 미 유지된 경우 전체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집행 금액 전액 불인정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단독 응모시 재공고
 - 일반형 과제 중 지정공모형 과제에 한하여, 접수결과 단독응모(1:1 경쟁)인 RFP에 대해서는 동일 RFP로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20일 이내임
 -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2016년 10월 11일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정부 출연금은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최초 협약시점부터 2년 내에 수립하여야 함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 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혁신평가단 신청

- 신규과제로 선정된 경우,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는 협약체결 전까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6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평가단에 신청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2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사업설명회 및 정보교류회 개최

- 사업설명회 : 2016년 제7차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방법, 절차 안내 및 사업참여와 관련된 규정 등을 안내
- 정보교류회 : 과제기획자(PD, Program Director)의 기획내용 설명 및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 마련
- 사업설명회와 정보교류회를 통합하여 개최
- 일시 및 장소

일시	지역	장소	비고
10월 17일(월) 13:30~	대전	인터시티 호텔 파인(Pine)홀	정보교류회는 사업설명회 후 분야별 설명 진행 예정

* 주차비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가급적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유 게시판

- 내용 : KEIT홈페이지에 『게시판』 을 운영하여 신규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연구자간 컨소시엄 구성이 용이하도록 정보교환의 장을 마련
- 게시판 위치

- <http://itech.keit.re.kr> 메인페이지 ▷ 왼쪽하단 업무바로가기 ▷ “산업기술 정보공유 게시판” 클릭

○ 활용방법

-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해당과제 참여를 위한 정보를 검색하여 타 기관에서 올려놓은 공동연구 참여조건을 열람하거나
- 관심기관이 적극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할 연구자를 찾겠다는 내용을 게시판에 업로드
- * 제외한인공학인 등 해외 연구자도 사업참여를 위해 게시판 활용 가능
- 정보교류회에 참석하는 경우, 관심이 있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 게시판에 연구자의 소속기관명 등을 기재하여 행사 당일까지 사전등록 후 참석 가능

□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 또는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 관련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구 분		과제제안요구서(RFP)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사업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담당부서	연락처 (053-718-내선번호)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총괄 사업총괄팀 053-718-8476					
창의산업 분야	지식서비스	지식서비스PD	8263	바이오나노융합팀	8239, 8240
	엔지니어링				8241, 8242
소재부품산업 분야	금속재료	금속재료PD	8376	섬유화학금속팀	8352
	뿌리산업	뿌리기술PD	8382		8363, 8361
	세라믹	세라믹PD	8371		8395
	주력산업T융합	산업융합PD	8269	전자전기팀	8448, 8449
시스템산업 분야	의료기기	메디칼디바이스PD	8375	수송플랜트팀	8452, 8457
	스마트카	미래형자동차PD	8261		8472, 8474
	조선해양	조선해양PD	8370		8423, 8421
	로봇	지능형로봇PD	8262		기계로봇팀